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최근 복잡·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유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중심의 진보된 상황관리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보완과 일부 조문 문구수정

◇ 주요내용

- 가. 그 간 경찰,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동대응요청 건에 대해 접수자의 판단으로 출동여부를 결정하던 것에서 의무적으로 출동조치 후 현장조치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(안 제9조)
- 나. 119종합상황실 업무에 신고폭주 대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하는 비긴급 신고 자제 재난안전문자 발송업무 추가(안 제11조)